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최근 시민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따라서 주택 등의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음.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보통 하수관악취로 불리는 정화조, 하수관거, 쓰레기집하장 등의 악취 와 더불어 생활악취로 분류할 수 있음. 특히 소규모 사업장악취와 생활 하수관 악취가 불특정지역의 생활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함.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악취를 (소규모 사업장)생활악취와 (하수관)생활악취 로 규정하였음.
-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질 분석이 쉽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도 어려운 상태임. 현재 악취방지법에도 도시형 생 활악취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리제도의 규정이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업장 악취 대부분은 악취관리지역외의 사업장으로 신고대상외 사업장(신고는 하지 않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함)과 비규제 사업장의 악취임. 따라서 비규제 대상인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악취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 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현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며, 특히 서울시의 악취 특성이 고려된 생활악취(사업장과 하수관악취)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12 내용 및 체계

- 서울의 악취배출원 및 민원 현황 분석과 현행 악취관련제도 및 정책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악취배출원 사업장과 주변시민 대상 설문조사로 악취 인식과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함.
- 더불어 국내외 악취관리 사례, 서울시 악취특성을 고려하여 악취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악취관리방안을 제안함.

악취배출원 현황 및 제도 분석

- 서울시의악취배출원 및 민원현황분석
- 악취관리 법규 및 관리체계 조사

국내 외 악취관리 사례 조사

- 기조사된 악취실태조사 분석
- 일본 미국 등 국외 악취관리 사례 조사

서울특별시 업종별 악취조사 및 설문조사

- 악취민원을 고려한 악취질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 및 악취질 조사 실시
- 사업장 및 주변 시민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서울시에 적합한 악취관리방안 및 조례(안)제시

- 서울시에 적합한 악취관리 기본 및 세부방향 제시
- 서울시 악취특성에 맞는 악취관리 방안 및 조례(안)제시

그림 1 연구내용 및 체계

2 **주요 연구결과**

21 서울시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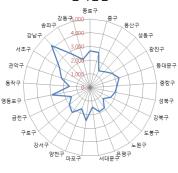
현재 악취방지법에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사업장과 악취관리지역외 신고대상외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악취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사업장과 하수악취를 말함.



그림 2 악취배출원 구분

이러한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은 인쇄시설(7,007곳), 섬유 및 염색시설(824곳),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13곳), 가정용 세탁업(7,385곳), 음식점업(52,964곳), 자동차 수리업(4,245곳)으로 인쇄시설의 경우 중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금천구에 밀집되어 있음. 섬유 및 염색시설은 중구, 성동구, 성북구에 밀집되어 있음. 가정용 세탁업은 구와 상관없이 분포되어 있으며 음식점업은 강남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자동차 수리업은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등에 주로 부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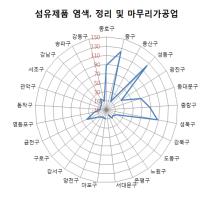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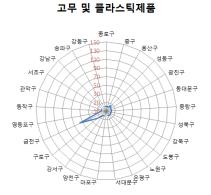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악취배출원 현황

- 현재 악취방지법에서 국가 공단산업단지 등의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악취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규모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악취배출시설 규모기준 이하이거나 규정된 시설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 하수 악취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2 서울시 생활(사업장 및 하수관)악취 민원 현황

- 서울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악취민원은 '10년~'12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인 생활(사업장)악취민원은 '10년 41
 2건에서 '12년 43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악취민원의 대부분을 차지(89%)하고 있음.
- 생활(사업장)악취민원의 업종을 살펴보면(2012년), 기타를 제외한 민원 중에서 음식점이 37건(27%), 제조시설이 21건(15%), 인쇄시설이 14건(10%), 인테리어 공사장이 13건(9%), 섬유염색이 12건(9%), 세탁시설이 10건(7%), 아크릴가공이 9건(7%), 자동차정비가 9건(7%), 사우나가 5건(4%)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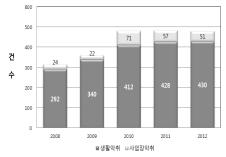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사업장 및 생활악취 민원발생 현황



그림 5 악취민원 업종별 현황(2012)

생활(하수관)악취민원은 '09년 595건에서 '12년 3,1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하수악취 중 하수관로를 통한 거리 하수냄새 민원이 78%(2,443건)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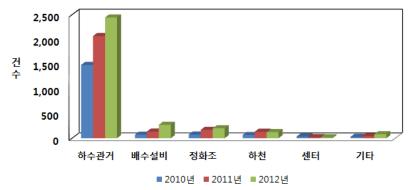


그림 6 하수도 시설별 악취민원 현황

23 악취관리 특성 및 문제점

- o 1회 악취측정 비용
 - 악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합악취 및 지정물질(22종)을 1회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악취분야 측정수수료 규정에 따라 약 220만원임.
 - 따라서, 악취질 측정에 많은 비용소요로 현황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o 생활(사업장)악취 농도 현황

- 악취배출사업장의 합동점검실적(2011년)에 따르면 39개소 도장 시설 가운데 복합악취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없음.
- 이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너무 높아 관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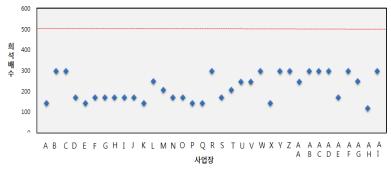


그림 7 악취배출사업장 합동점검실적(2011)

o 악취민원 연속발생 사업장

- 악취민원이 최근 2~3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한 사업장은 강서구
 와 서대문구의 도장시설로 총 7곳임.
- 또한, 6개 업종 중에서 1년에 2회 이상 민원발생 사업장은 동대문 구 등 20곳의 사업장임.

악취물질과 연관된 대기오염물질 VOCs

-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유기용제사용에 따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여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인 도장시설, 세탁업, 인쇄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표 1 VOCs 배출원별 관리대책

구분	관리대책	관련규정 관리기관
 유 기	○ 환경친화형 도료보급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 유기용제 함량 기준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청
	○ 도장시설의 VOCs 배출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시 자치구
용	○ 세탁시설 VOCs 배출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및 N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제	- 처리용량 30kg 이상인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서울시 자치구
	○ 인쇄시설 VOCs 배출 관리	
사	- 연료사용량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 서울시 자치구
용	용적 1㎡ 이상 인쇄시설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 도로공사표준시방 국토부, 환경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4 주민 및 악취배출원 사업장 설문조사

o 설문조사 개요

- 연구진은 2012년 서울시 악취민원 현황을 기준으로 20건 이상의 민원발생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선정된 대상지역 내의 악취민원 현황으로 주요 6개 업종(도장시설, 음식점, 인쇄시설, 섬유 및 염색시설, 아크릴제조업, 세탁업)을 선정함.
- 또한,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 시민의 악취 의식조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에 대하여 분석함.

• 사업장 설문조사 분석

- 사업장에 지자체에서 악취개선비용을 지원해 줄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의향에 대해 '매우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남.
- 설치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25%)은 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새로운 규제를 위한 것으로 결국 사업장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냄.
- 지속적인 악취발생 시 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임.
- 사업주가 스스로 관리하여 서울시의 단속 등 규제를 면제받는 제 도인 자율협약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설문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3%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활용의사가 '매우 있다'와 '다소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80%로 나타나 향후 제도 도입 시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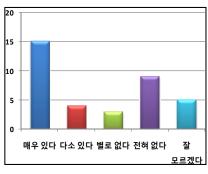


그림 8 비용지원 시 악취시설 설치 의향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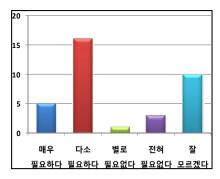


그림 9 지속적 악취 발생 시 관리 규제의 필요성 여부

o 주민의식 분석

-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악취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계절은 봄, 시간은 오전, 날씨는 흐린 날일 때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해 '고통스럽다'는 의견이 66%에 달하여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악취를 체감하였을 때
 57%의 응답자가 민원제기를 고려하였다고 응답함.
- 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 규제는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가 절반씩 차지하였으며 이는 사업장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의문이 동시에 표출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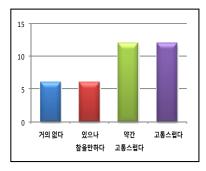


그림 10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한 고통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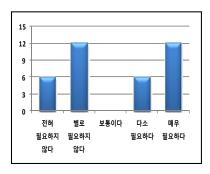


그림 11 지속적 악취 발생 시 악취 관리 규제 필요성

o 생활(사업장)악취질 농도 분석

- 연구진은 음식점, 세탁업, 인쇄시설, 도장시설, 아크릴 제조업, 섬유 및 염색업의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질 농도를 분석함.
- 그 결과, 관악구 세탁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15 이하)을 만족함.

표 2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업장 악취질(농도) 측정 결과

분	측정결과	기준
A(성북구)	6.7	
B(성북구)	3.7	
C(관악구)	30.0	
D(관악구)	6.7	
E(중구)	8.2	
F(중구)	5.5	15 01きし
G(강서구)	4.5	- 15 이하 - -
 H(강서구)	8.2	
l(중랑구)	5.5	
	6.7	
K(성북구)	6.7	
L(성북구)	4.5	
	B(성북구) C(관악구) D(관악구) E(중구) F(중구) G(강서구) H(강서구) I(중랑구) J(중구) K(성북구)	A(성북구) 6.7 B(성북구) 3.7 C(관악구) 30.0 D(관악구) 6.7 E(중구) 8.2 F(중구) 5.5 G(강서구) 4.5 H(강서구) 8.2 I(중랑구) 5.5 J(중구) 6.7

3 생활악취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31 생활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정책 방향

표 3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방안

	_	
기본방향	_	세부방안
생활(사업장과 하수관거)악취 관리의 공공 역할 강화	⇒	 서울의 7대 생활악취배출원 관리에 중점 생활(사업장)악취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 수립 생활(하수관)악취는 '생활악취배출원관리지점(구역)' 으로 지정된 곳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로 흡입배제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확보	⇒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생활악취 배출원관리지점 지정'을 통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확보 자율협약을 통한 사업장 악취관리 추진
간소화된 생활악취 물질의 측정방법 추진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물질의 측정 간소화를 통해 악취물질의 정량화 추진 주요 악취물질과 항목을 관리하고, 기기측정방법의 확립
사전 예방중심 및 통합관리	⇒	• 생활악취에 VOC, 미세먼지 등과 통합관리 강화 • 기술진단, 컨설팅제도와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

311 생활(사업장과 하수관거)악취 관리의 공공 역할 강화

-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은 소규모 영세업이며,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 등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생활(하수관)악취배출원은 합류식 하수관거이며 그 중 고층건물의 지하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의 저류피트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관)
 악취가 심각함. 이 하수관거의 악취방지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312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확보

일정규모 이상(신고대상외) 사업장과 비규제 소규모사업장의 악취관리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민원이 많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13 간소화된 생활악취 물질의 측정방법 추진

 악취물질측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특히, 공기희석관 능법과 기기분석에 의한 지정물질의 1회 측정 시 200만원 이상의 비용 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악취물질은 배출시간에 따라 여러 번 측정해 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비용은 크게 늘어남. 따라서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 업종에 따라 배출비율이 높은 악취항목 만을 측정하는 간소화방법이 요구됨.

314 사전 예방중심 및 통합관리

한 현재 생활(사업장)악취배출원 중에서는 VOC 및 미세먼지와 관련된 곳이 많음. 따라서 이들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진단과 자금지원 등을 통한 악취관리방법이 필요함.

32 **개선방안**

321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배출원 관리에 중점

- 생활(사업장)악취는 인쇄업 사업장 등 6개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음. 즉,
 직화구이 음식점, 도장시설, 인쇄공장, 화학섬유 제조공장, 아크릴제조,
 세탁업종이 그것임. 여기에 하수관악취를 포함하면 생활악취배출원은
 7개로 늘어남.
- 이 7개 업종에서 서울시 악취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중점을 두어 관리함.
 즉 이것이 조례에 포함될 서울형 생활악취배출원임.

322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생활악취 배출원관리지점 지정'을 통한 맞춤형 관리시스템 확보

- 서울시의 생활악취사업장이 불특정지역에 산재하여 있고, 이러한 비규제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악취측정 및 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이라는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 이러한 맞춤형 관리시스템은 비규제 사업장을 일시에 전부 관리할 수 없는 상황과 행정과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 특히「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선정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수준의 배출허용농도를 상회하거나 기타 정성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생활악취배출사업장이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선정되면 행정 당국에서 배출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최소한 의 행정지도와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323 생활악취물질의 항목 간소화를 통해 악취물질의 정량화 측정 추진

- 악취질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정량적인 악취질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악취질 평가가 필요하므로 생활악취물질 항목이 간소화되어야 함. 즉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 공기희석 관능법과 사업장 업종에 따라 측정항목을 대표물질 3~5개로 간소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 o 예를 들어 7대 생활악취배출원의 대표물질은 다음과 같음.
 - 음식점: 스티렌, 암모니아, 황화수소
 - 도장, 인쇄시설: 아세트알데히드, 탄화수소류, 케톤알데히드 류 등
 - 섬유 및 염색시설 :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합물, 저급지방산류
 - 플라스틱제조업 : 탄화수소류, 케톤알데히드류, 알코올류, 에스 테르류
 - 하수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324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점진적 강화 추진

-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 상으로 적용하려고 마련된 것이므로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는 너무 높 은 기준임. 따라서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통합된 지역에 공장 등을 입주시켜 관리하는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농도기준이 낮음.
 즉 주거지 등의 생활권에 분포한 생활악취배출 사업장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세사업장과 생활권 사업장 임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700배에서 500배로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과거 배출농도를 분석하여 보면 500배를 적용하여도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함.

325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VOCs와 미세먼지 등의 통합관리 강화

- 서울시의 7대 생활(사업장과 하수관)악취 배출 사업장에서 VOCs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장은 도장시설업과 세탁소, 인쇄업 등임.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VOCs는 악취물질이기도 함. 또한 숯불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악취물질제어와 관련되어 있음. 즉 이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면 생활악취물질도 제거됨. 따라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임.
- 다만 이들 사업장도 비규제 사업장에 속하므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음. 따라서,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에 비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방지법에도 비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26 밀폐화 및 적절한 처리시설을 통한 사업장 악취저감

 생활악취인 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냄새발생원을 차단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과 배기장치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설치하는 적극적 인 방안이 있음. 이러한 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인 청소와 작 동여부 확인 등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 악취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배기 덕트를 통해 악취를 흡입하여 가능한 한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으로 배출하면 악취가 저감됨. 다만, 주택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주변 주택의 창문이 없는 쪽으로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327 생활(하수관)악취는 하수도에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통한 배제

- 현재 음식점내 하수관의 생활악취는 봄, 여름철에 매우 심각하여 내부 하수관에 덮개를 설치하여 악취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음. 그러나 이 것으로 인해 강우 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고 있어, 침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지정된 하수관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흡입 배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즉 가로등 최상단에 배출팬을 설치하고 강제로 배출하면 하수구의 빗물받이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흡입되면서 악취가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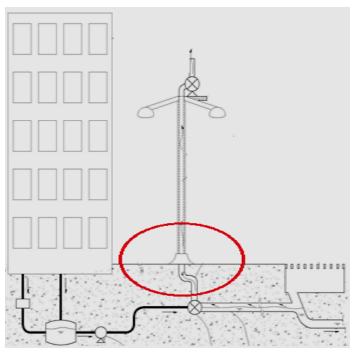


그림 12 가로등을 이용한 하수관거 악취저감시설

328 기술진단 및 컨설팅제도,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행정당국에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42%는 설치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술진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의미함.
- 특히「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이라는 생활(사업장)악취 배출원
 의 관리가 선별적이고, 행정지도 위주이지만 규제를 수반하므로 기술진
 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이라는 포지티브 정책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329 자율협약관리제도를 통한 생활(사업장)악취 관리

-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협약관리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 자율협약관리제도 도입 시 긍적적인 활용의사가 80%에 달했음.
- 즉 자율협약관리제도의 도입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생활(사업장)악취를 저감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33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제3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사업 활동 및 공공하수관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o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 2. "생활악취"란 서울시내 생활환경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하다.
- 4.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 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다.
- 제3조(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활악취 배출원) 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활악취배출원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악취와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 악취 및 하수관거 악취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리대상 생활악취 배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음식점(직화구이)
 - 2. 세탁업
 - 3. 도장시설
 - 4. 아크릴 제조업
 - 5. 섬유가공시설
 - 6. 인쇄 및 출판시설
 - 7. 생활하수관거
- 제4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는 5년 단위로 생활악취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에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현황
 - 2.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향
 - 3. 악취저감 대책
- 제5조(생활악취관리위원회) 생활악취관리 및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

하다.

- 제6조(생활악취 배출원의 관리) 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거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점」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소지점, 하수관거의 지정 및 해제)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점의 지정 및 해제는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생활악취관리지역 또는 소지점, 하수관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악취관리지역 또는 소지점, 하수관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1. 생활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생활악취 민원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3. 생활악취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악취관련부서에서 생활악취관리 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 제8조(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지정물질) 서울시의 생활악취 배출원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 지정물질은 별표1과 같다.
- 제9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악취방지법 제**
 조에 의하여 강화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서울특별시 관리 대상 생활악취 배출원 중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역 또는 관거 및 소지 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생활악취 측정의 간소화 실시) 생활악취물질의 측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악취발생 유무를 생활악취 지정물질 측정 이나 희석법에 의한 측정을 통해 결정한다. 특히 악취는 사업장의 배출 구 유무와 관련없이 사업장 부지 내외에서 측정할 수 있다.
- o 제12조(서울특별시 생활악취의 관리 모니터링 지점 선정 및 실태조사)

서울특별시는 생활악취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모니터링 지점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2.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도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자율점검 협약 체결 및 이행) 생활악취 관리지역 및 소지점, 하수관거로 지정된 생활악취 배출 사업자는 생활악취관리 행정당국과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 및 이행할 수 있다. 자율점검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일정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협약체결 및 이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등의 통합 컨설팅 실시) 악취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업소와 VOCs 배출업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통합관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VOCs 배출업소관리를 위한 컨설팅은 악취물질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지원)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방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재원은 기후변화기금에서 확보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